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94

발의연월일: 2021. 5. 10.

발 의 자:김홍걸・김경만・김교흥

김민철 · 김수흥 · 김영호

김종민 · 노웅래 · 박상혁

박찬대 · 안민석 · 양정숙

오영환 • 이규민 • 이상헌

이용선 · 이학영 · 임호선

황운하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원활한 공무의 수행과 공무를 수행하는 이의 안전을 위해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발급하고 있음.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 수행을 위한 경우 외에도, 공무 수행을 위해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들의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 미혼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어 동반을 하는 경우 해당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규정에 따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은 408명,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 성인은 203명에 이름.

장애를 가지지 않은 20세 이상 27세 이하의 성인이 생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외교관여권 혹은 관용여권까지 발급하는 것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실제 생활능력의 부재 여부 및 동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장기간 공무상 해외에 주재하지 않는 사람의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생활능력 없는 성인자녀 역시 발급이 가능하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가사 보조를 위해 동반하는 경우에도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해외 공무 수행을 위한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용여권과 장기 해외 주재가 필요한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의 경우 미혼 장애인 부양가족,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생활능력부재 부양부모에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장기간 해외공무가 인정되는 경우와 상시적 외교사절 활동이 필요한 전직·현직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외교부장관과 현직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및 현직 국회의원에 한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며, 부부동반이 필요한 외교사절 활동을 인정받는 때에만 그 배우자까지 외교관여권 발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발급 대상을 법률로써 정비하고자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1.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
- 2.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함에 따라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양 부모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 1.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

- 3.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 ③ 외교부장관은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수 있다.
- ④ 외교부장관은 관용여권 소지자의 미혼인 장애인 부양가족의 국외 근무지 동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있다. 다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배우자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1. 전직 현직 대통령
 - 2. 전직·현직 국무총리
 - 3. 전직 · 현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 4.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 5. 현직 국회의원
 - 6. 현직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 7.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 ②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1.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 2.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 3.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 6.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 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배우자, 18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양 부모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 1. 현직 특명전권대사
- 2.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 공무원
- ④ 외교부장관은 외교관여권 소지자의 미혼 장애인 부양가족의 국외 근무지 동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있다. 다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
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전설> 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 2.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임·직원 중에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함에 따라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동반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의미혼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부양 부모에게 관용여권을 발
급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외 주재원 중에 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 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 육을 위한 교사
- 3.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 원
- ③ 외교부장관은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④ 외교부장관은 관용여권 소지자의 미혼 장애인 부양가족의 국외 근무지 동반 필요성이인정되는 경우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제외한다.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

<신 설>

- <u>니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외</u> 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1. 전직 · 현직 대통령
- 2. 전직 · 현직 국무총리
- 3. 전직·현직 대법원장 및 헌 법재판소장
- 4.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 5. 현직 국회의원
- 6. 현직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 7.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 ②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 다.
- 1.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 2.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 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 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 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3.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 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단원
- 6.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 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18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양 부 모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 1. 현직 특명전권대사
- 2.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 른 국가공무원
- ④ 외교부장관은 외교관여권

소지자의 미혼 장애인 부양가 족의 국외 근무지 동반 필요성 이 인정되는 경우 외교관 여권 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은 제외한다.